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

2022. 9.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I. 배경	1
II. 인증제도 및 시장 현황	2
III. 문제점	4
IV. 정책 추진 방향	6
V. 개선방안	7
VI. 향후계획	18

I. 배경

□ 인증제도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검증된 정보제공을 통해 상업적 거래 등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나, 오·남용 시 부작용 야기

○ 제품의 우수성(기업), 상품 선택의 편리성(소비자), 안전, 환경보호, 산업육성 등 (정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

 안전(제품)	 환경보호	 보건(식품)	 산업육성
 전기용품, 무선통신기기	 건축물	 유기농 식품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 반면,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기준 등은 시장경쟁 왜곡, 소비자 혼란, 기업의 부담 증가 및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

□ 정부는 기업의 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 차례 종합대책* 수립·시행하고 인증제도 정비, 규제 개선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추진

*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14.8월), 「인증규제 혁신방안」(‘15.11월) 등

○ (제도 정비) 인증기준 합리화(KS-KC일치), 시험결과 상호인정(‘14.3월, 108개 품목), 유사·중복 통폐합(‘15.11월, 36개 인증제도 폐지) 등

○ (규제 개선시스템) 기술규제 영향평가(‘13), 주기적 실효성 검토(‘19) 등을 통해 인증제도 도입, 운영 과정에서 규제 개선시스템 구축

□ 그간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증비용 부담, 제도 관련 애로 해소를 지속 건의*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인증제도 통폐합·개선 등 추진 필요

II. 인증제도 및 시장 현황

1 인증제도 현황

□ (인증의 개념) 제품·서비스·공정 등이 규정된 요건(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제3자(인증기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서면으로 보장하는 것

* (사례) KC인증(우리나라), CE인증(EU), UL인증(미국), CCC인증(중국) 등

○ 법적근거 여부에 따라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으로, 법정 인증제도는 강제성 여부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

< 인증제도의 분류 >

구 분		내 용
법정 인증	의무	국민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 (인증 취득 없이는 생산·유통이 불가능)
	임의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에 의해 시행하는 인증 (우선구매,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시 준강제 인증)
민간인증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민간에서 자율시행

□ (인증제도) 국내 24개 부·처·청에서 222개(의무: 89개, 임의: 133개)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 중('22.4월)

부처명	계	부처명	계	부처명	계	부처명	계
국토부	35	산림청	11	식약처	5	여가부	2
해수부	30	복지부	10	교육부	4	해경청	2
환경부	24	행안부	9	기상청	4	관세청	1
산업부	23	문체부	7	방사청	4	문화재청	1
농림부	19	소방청	6	중기부	3	개인정보촉	1
과기부	13	고용부	5	공정위	2	특허청	1

< (참고) 적합성평가의 개념 >

○ (적합성평가)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평가·증명하는 것으로, 시험, 검사, 인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구분	개념
시험 	표준 또는 법, 규정 등에 의거, 제품, 소재 등을 시험하여 결과값을 제공
검사 	법령(기술기준) 등에 따라, 제품 등을 시험하고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별
인증 	제3자(인증기관)가 표준 등의 절차에 따라 제품,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가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서면으로 보증하는 것

2 인증산업(시장) 현황

- (시장규모) '20년 국내시험인증시장* 총 규모는 약 14.7조원, 연평균 성장률은 약 6.8%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 중

* 제3자가 시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시장(7.5조원)과 제조업체가 직접 시험을 수행하는 인하우스시장(7.2조원)으로 구성

- (시장분포) 국내 서비스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험인증 서비스 사업체 증가로 인해 평균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

- ① (현황) 총 사업체 수는 5,027개로 평균 매출액은 15억에 불과, 종업원 20명 미만은 약75%, 매출액 10억 미만은 전체의 약82%를 차지

- ② (공공영역) 6대 비영리 기관(KTL, KCL, KTR, KTC, FITI, KATRI)이 시장의 약 9%(6,600억원)를 점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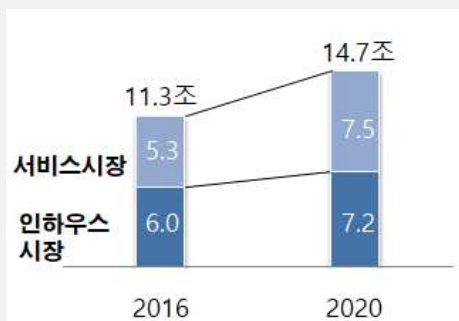
* 국내 비영리기관은 글로벌 해외기관과 비교시 매출액은 1/10 수준으로, 법정 (의무)인증과 국가 R&D위주의 업무수행으로 국내시장에 안주

- ③ (외국계) 외국계 기관(외국인 투자법인 포함)은 국내 민간시험업체 M&A* 등을 통해 국내 제3자 서비스 시장(7.5조)의 약 14%(1조530억원) 점유

* 유로핀스(유럽계 글로벌 매출 1위)는 (주)KCTL(한국 시험인증기관, 국내업계 매출 5위) 인수·합병 ('21.8월)

<국내 시험인증 산업 현황>

< 국내시장 규모 >



< 기업 수 및 평균 매출 >

구분	제3자 서비스시장(억원)/ 전체시장대비(%)	기업 수 (개)	평균매출 (억원)
2016	53,087 / 47.0	3,422	15.5
2020	75,440 / 51.3	5,027	15.0

* '16대비 서비스시장 규모 42%↑, 기업 수 47%↑

III. 문제점

1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증제도 운영

- 제도 도입 이후 시장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국제기준(ISO, IEC등)에 못 미치는 인증제도 운영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업계 부담으로 작용
 - * (대기전력 저감제도) 팩시밀리, 모뎀 등 시장수요가 크게 감소된 노후품목이 포함되어 기업의 인력·비용 소모(신규제품 인증시 한제품당 6일 / 50만원 소요)
 - * (KC안전인증) 친환경 에어컨 냉매(A2L) 개발에 따른 국제표준(IEC 60335-2-40) 채택('18)을 국내 KC안전기준에는 '21년에 반영하여 개정
- 융복합 제품의 경우, 제도(기준)이 시장의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술혁신에 따른 초기시장 창출이라는 산업계 요구 부응에 미흡
 - * (LG전자식 마스크) '의약외품'으로 판매를 위해 식약처에 허가 신청('20.7) 후 기준 미비로 자진 철회 ⇒ 생활용품으로 규제 신속확인 요청('21.5)

2 다수/유사 인증제도 발생

- 안전, 환경 등의 정책목적에 따라 부처별 인증 도입의 증가로 하나의 제품에 목적이 다른 유사·중복인증 발생하여 기업의 부담을 야기

< 연도별 인증제도 운영현황 >

구분	2012	2015	2018	2020	2022
전체	183	203	174	186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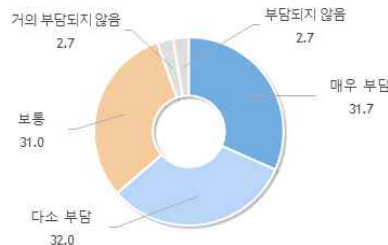
- * LED조명은 7개 인증(KS, KC, 전자파, 효율등급, 고효율, 환경표지, 녹색인증)이 유사중복
주요 5개 인증(KS, KC, 전자파, 고효율, 환경표지) 취득시 약 350일, 12백만원 비용 소요

- 업계가 제기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41.7%), '짧은 유효기간'(36.3%), 등의 순으로 조사('20.5, 중기중앙회)

3 인증 비용 부담

- 중소기업의 평균 인증취득 비용은 2,180만원('19)*으로, 시험·인증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63.7%로 다수 차지('20.5월, 중기중앙회)

< 인증 취득 시의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단위 : %) >



* 중소기업 연간 평균인증비용: ('06) 1.3천만 → ('15) 3천만 → ('19) 2.2천만원

** 법정인증(KS,KC) 수수료는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10년 이후 지속 동결

- 시험인증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정책으로 '인증 취득 비용지원' 의견이 가장 높음(40.3%)

* 인증취득 비용 지원(40.3%) > 서류 간소화·표준화(39.0%) > 인증기준 재정비(9.0%) 등

- 중기음브즈만은 정부에 중소기업의 시험·검사 등 인증비용 한시적 경감(1년, 10~20%) 또는 비용 지원을 건의('22.5)

4 법정 인증시장의 경쟁 제한적 운영

- 국내 시험인증은 정부주도의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운영으로 인해 민간의 참여를 저해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연

- 법정 인증기관의 지정조건에서 비영리법인 등의 非기술적 요건을 규정하여 민간 (영리)인증기관의 참여를 배제

*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검사): 주차장법 제19조의12 및 시행령 제12조4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사무소 5곳(수도권:1, 기타:4)이상 유지 규정

- 그 결과 국내 산업의 약 90%가 영세 업체(업체당 평균 매출액: 3.23억 '20)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감율
평균 매출액	3.33	3.01	3.39	3.23	-0.7%

- 반면 개별법에 의한 법정 시험인증을 주로 수행하는 국내 상위 10대 기관의 매출은 지속 증가

IV. 정책 추진 방향

비전

국민 · 기업을 위한 인증산업의 경쟁력 제고

목표

- ① 시장변화에 발맞춘 인증제도 및 시장환경 개선
- ② 인증부담 완화 기업 지원체계 강화

추진내용

시장변화에 발맞춘
인증제도 및 시장환경
개선

- ① 인증제도의 지속 개선
- ② 법정 인증기관 지정요건 개선
- ③ 시험인증의 신뢰성 강화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지원체계 강화

- ④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수수료 감면
- ⑤ 다수인증 품목 확대 및 지원 체계 강화
- ⑥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인증기관 글로벌 진출 확대

V. 개선방안

① 인증제도의 지속 개선

◆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23개)를 대상으로 유효기간 연장 등의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국조실과 함께 쏘부처 인증제도의 통합·폐지·개선을 검토

□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는 차관 주재 '규제혁신TF'를 통해 인증 통합, 폐지, 개선 등의 규제개혁 방향을 결정

* (에너지 효율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예시) 대기전력 저감제도는 효율등급제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은 단계적으로 소비효율 등급제로 이관 (~'27)

< 산업부 규제혁신 TF 운영 방향 >

○ (역할) ①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에 따른 과제 발굴, ②산업부 소관 규제에 대한 심판, ③자체 개선안 마련

* ①투자 규제 제거, ②숨은 규제 개선, ③킬러 규제 해소, ④공공부문 역할 재조정

○ (구성) 1·2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TF내 산업, 혁신성장, 에너지, 표준 등 4개 분과를 설치

○ (운영)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

* TF에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현황 지속 점검

□ (주요 개선사항)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의 연장 등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 완화

* 인증 유효기간: 인증서가 유효한 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주기

○ (연장) 이동형 전기차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을 확대(4→7년)* 하고 KS인증(3년), 녹색인증(3년) 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

*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내구성, 가속수명 등의 시험결과 고정형(7년)과 동등 성능확인('19)

* 계량법 시행령(별표13, 계량기 검정·재검정 유효기간) 개정안 입법예고('22下)

- 인증제도별로 개별적 운영(2~3년) 되고 있는 품질·환경·에너지 절약 관련 7개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일괄 연장 추진

<산업부 인증제도 유효기간 개선(안)>

인증제도명	유효기간		인증현황 (건수, '21년)	비고
	현행	개선		
KS인증	3년	4년	14,115	품질
단체표준 인증	2~3년	4년	9,890	
녹색인증	3년	4년	8,625	환경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3년	4년	243	
재제조제품품질인증	3년	4년	2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3년	4년	51,732	에너지 절약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계량기) 검정	4년	7년	33,879	상거래

- (유효기간 연장효과) KS인증 등 7개 인증(118천여건, '21년 기준)의 유효기간 연장시, 20%이상의 인증비용 절감효과 기대

* KS인증의 경우 신규취득 후 3년마다 정기심사가 도래하여, 전체 인증유지(8,200개 공장, 14,115건)의 1/3이 당해년도 정기심사 대상

- (조정)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6개의 어린이제품 안전 확인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현행 5년*) 조정을 검토·추진**

* 중기중앙회는 완구·학용품기업(205개)의 KC인증제도 관련 업계 애로사항(인증 유효기간(5년) 연장·폐지, KC인증 취득비용 감면 등)을 조사·발표('22.5)

** 소비자단체, 전문가,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간담회 개최('22.下)

- (향후계획) 관련 전문가, 단체,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증 유효기간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유효기간 완화 품목은 시장 사후관리를 강화**

* 제도별 이해관계자 간담회, 공정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

** 유효기간 완화 품목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시판품 조사 규정을 활용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조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조사 등))

- 전부처 222개 제도(산업부 23개 포함)는 국조실과 함께 3년('22: 64, '23: 79개, '24: 79)에 걸쳐 통합, 폐지, 개선, 존속 여부를 검토*

* '22년 64개 인증제도에 대한 검토결과는 '22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예정

-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유사·중복, 불합리한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효성을 검토하는 제도 도입·운영('19~)

* 「국가표준기본법」('18.6.12) 및 동법 시행령 개정('18.12.21)

- 2주기 실효성 검토('22~'24)는 전부처 인증제도 222개(산업부 23개 포함)를 3년('22: 64, '23: 79개, '24: 79)에 걸쳐 통합·폐지·개선·존속 여부 검토*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 '12.12.13)에 따라 산업부(국표원) 기술규제 개혁 작업단 설치

- 부처전문가·이해관계자의 검토 및 분석,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기술규제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종합의견서(안) 도출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선안을 확정하고 담당 부처에서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이행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절차>

① 분석

자체검토서

- ▶ 각 부처에서 작성
- ▶ 자체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전문가검토

- ▶ 시험기관 컨소시엄
- ▶ 산·학·연 전문가

이해관계자의견

- ▶ 관련 협단체
- ▶ 인증 취득 기업

② 협의

관계부처 협의

- ▶ 종합의견서 초안을 바탕으로 해당 부처와 정비(안) 협의

기술규제위원회 검토

- ▶ 존속 및 정비과제에 대한 종합 의견
- ▶ 쟁점과제 부처소명을 통한 논의

③ 결과도출

종합의견서 최종(안) 마련

- ▶ 필요시 부처와 의견 교환
- ▶ 국표원 최종(안)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안 확정

- ▶ 적합성평가대상 과제 검토결과 확정

④ 이행, 관리

각 부처 개선안 이행

- ▶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계획 마련·시행
- ▶ 존속과제는 3년 후 실효성 재검토

이행실적 점검

- ▶ 개선과제 모니터링 및 이행 독려

② 법정 인증기관 지정요건 개선

◆ 민간의 법정인증분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 기관 지정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他인증제도로 확대를 검토

□ 법정인증 기관 지정제도의 비영리법인 등의 배타적 제한조건을 개선하여 민간참여가 확대되는 경쟁 환경을 조성

○ 인증기관 지정요건 중 공통요소는 국제표준에 따른 KOLAS공인기관 요건을 활용하고 안전, 환경 등 분야별 전문요건을 추가 반영

* 지정요건(예) : KOLAS 인정기관 + 제도별 전문 요건(설비, 인력 기준 등)

□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 개선 (「전안법」시행령 개정)

○ 법정 안전인증기관의 자격을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리기관의 인증기관 참여에 제한

* 현재 시험분야(인증기능 제외)는 영리기관 참여를 이미 허용('19.8.~)

○ '소정의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인증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개선 방안 검토

<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

현행 (전안법 시행령 제7조)

1.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2~6. 국제 공인기관(KOLAS, KAS) 인정, 시험설비 및 인력 보유, 제조·수입자와의 독립성 등

* 시험설비 요건 : 안전인증대상제품 1/3이상의 분류에 대해 해당 시험설비 보유

○ 산·학·연 전문가 및 국내외 시험기관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 및 일정 마련('22.10월)

□ (향후계획) 우리부 他인증제도(23개) 관련 조항은 각 부서별로 검토

③ 시험인증의 신뢰성 강화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중인 부정행위 조사업무를 확대하여 성적서(인증서) 발행·유통·사용 쏘분야에서 신뢰성을 강화

□ 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위변조, 허위발급 등 부정 성적서(인증서)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정행위 조사제도”를 도입·운영('19~)

○ 적합성평가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지정('21.5.18) 및 조사센터(T.1833-4200, <https://tacci.kr>) 설립·운영('21.5~)

* 부정성적서 신고·접수, 인증기관·수요기업에 관련 자료요구, 사업장 조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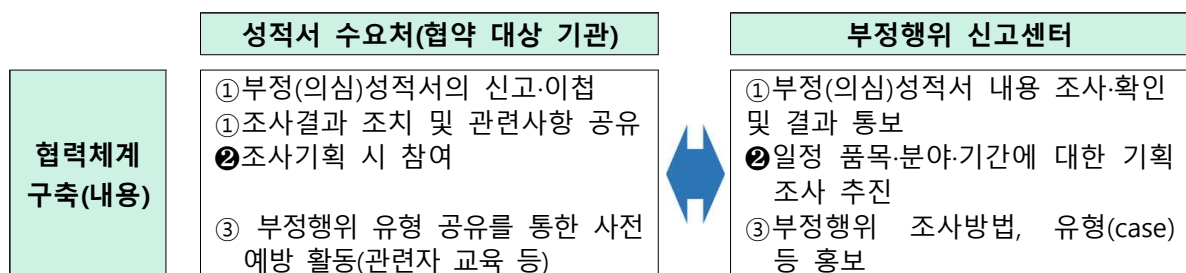
○ (조사실적) 총 18건 (종결 13건, 조사 중 5건, '22년 6월 현재)

합계	형사고발	타법령 위반	타부처 이첩	부정행위 없음
13	1	1	1	10

□ 부정행위 조사기능 확대

○ 부정행위 신고접수에 따른 現조사센터의 업무수행에서 인증서(성적서) 주요 수요처와 MoU를 통해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확대

< 부정행위 조사협력 체계 개념도 >



* 부정행위 조사센터(제품안전관리원)과 발전 5개社간 부정행위 조사협력 MoU추진('22.9)

□ 인증기관·수요기업, 사용·유통처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부정 성적서(인증서)에 대한 맞춤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

* 조사센터 홈페이지 (<https://tacci.kr>) 등을 이용

④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수수료 감면

◆ 산업부(국표원) 소관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 등 4개 인증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추진

□ 추진 경과

- 중기 읍부즈만 중소기업의 시험인증수수료 감면 건의(22.5월)
- 시험인증기관 의견수렴(7.8) 및 감면방안 검토
 - 시험인증기관은 수수료 감면방안에 대해 찬성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인증품목 구분 없이 업체당 2회 지원 의견)
 - * 수수료 감면 대상 인증기관 표준협회, KTL, KTR 등 12개 기관 참석
 - 법정 인증수수료 감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대상 여부 검토
 - * 공공의 이익(기업부담 완화)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면책 대상에 해당(산업부 감사담당관실 의견)

□ 인증수수료 감면방안

- 중소기업*의 인증비용(신청비용/시험수수료/인증심사 수수료) 중 **KS/KC 인증 신청비용, 인증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비용 지원사업('22년: 1.4억)에 선정 기업)
 - (인증수수료 감면) **KS인증/KC안전인증**(전기, 생활, 어린이제품)의 인증심사비용의 **20%** 감면(출장비, 심사수당 등 실비는 제외)
 - (신청비용 면제) **KC안전인증**(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또는 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
 - (감면기간) 6개월간('22.10.1~'23.3.31) / 업체당 최대 4회
 - * 세부 감면내용 붙임 참조
- 인증수수료 감면방안 시행 시 중소기업은 최소 **10억원 이상 인증비용** (추정) 절감 효과를 기대

- 향후 국표원 소관 인증제도의 법정 수수료 규정(시행규칙 등) 정비를 통한 인증수수료 감면근거 마련을 검토('23~)

참고

인증수수료 경감 내용 상세 및 기관 현황

① 인증심사 수수료 20% 경감 (최대 2회)

구분	근거법령	수수료	
		현행	20% 경감 후
KS인증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4] 2.가. 기본수수료	50만원	40만원
KC안전인증 (전기,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2.3) 공장심사 수수료	·전기용품: 20만원 ·생활용품: 25만원 (국외: 60만원)	·전기용품: 16만원 ·생활용품: 20만원 (국외: 48만원)
KC안전인증 (어린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4] 1.다. 공장심사 수수료	국내: 25만원 국외: 60만원	국내: 20만원 국외: 48만원

② 접수(또는 발급) 비용 면제 (최대 2회)

구분	근거법령	수수료	
		현행	면제
KC안전확인 (전기,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2.나.1) 증명서 발급 수수료	5만원	-
KC안전확인 (어린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4] 6.가.1) 신고 접수 비용	5만원	-
계량기 형식승인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별표 1] 2.1) 신청 수수료	5만원	-

(비고) * 인증 등의 신청시 중기부 발행 중소기업 확인서 첨부

* 신청 이후 제품시험 지연 등으로 최종 인증서(확인서) 발급이 지연('23.3.~)된 경우
도 경감(또는 면제) 적용

* 제품시험 탈락 등으로 재신청할 경우에는 감면기간에 재신청한 경우만 유효

< KS인증, KC안전인증 및 계량기 형식승인 기관 현황 >

기관명	구분	기관명	구분	기관명	구분
한국표준협회	KS	기계전기전자 시험원	KS, 계량기, KC(전기, 생활, 어린이)	조명ICT연구원	KS
산업기술시험원	KC(전기용품)	의류시험원	KC(생활, 어린이)	한국에너지공단	KS
화학융합시험원	KS, KC(전기, 생활, 어린이)	FITI시험원	KS, KC(생활, 어린이)	로봇산업진흥원	KS
건설생활환경 시험원	KS, KC(생활, 어린이)	KOTITI시험원	KC(생활, 어린이)	가스안전공사	KS

⑤ 다수인증 품목 확대 및 지원 체계 강화

◆ 다수인증 제품군에 대해 인증비용·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융합신제품에 대한 인증 취득지원 등으로 확대 추진

□ 인증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한 제품 다수인증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인증 취득 시간·비용 절감을 지원

* 기업의 다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사업 확대 추진
(’21년 원스톱 지원 품목 : LED조명, 가구, 수도꼭지, 전선, 창호, 펌프 등 20개 제품군)

< 다수인증 취득지원 현황 >

연도	서비스 제품군 수 (신규 발굴)	참여기관 수 (지원창구)	서비스 실적		
			방문홍보	전문상담	통합인증
’21년	20개 (14개)	7개 기관* (전국 17개 창구)	484 건	221 건	27 건

○ 다수인증 취득지원 제품군 외에도 융합신기술제품 인증, 일반 인증 품목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23~)

○ 다수인증 지원센터와 인증취득 희망 기업 간의 ‘권한 위임 계약’을 통해 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업무 대행

* 인증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제품시험 의뢰 및 결과 확인, 인증서 발급 수취

< 다수인증 업무 위임 계약 (예시) >



□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의 온라인 플랫폼(PC·모바일) 개발과 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통해 기업 접근성 강화 및 서비스 고도화 추진

* (데이터 연계) 오프라인으로 제공된 상담 시나리오, 통합인증 등 데이터의 온라인 이관·연계

* (접근성 강화) 기업 지원활동을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확대 운영



⑥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인증기관 글로벌 진출 확대

◆ CE(유럽), UL(미국) 등 주요국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획득이 용이하도록 해외인증기관과 MoU를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

□ 수출기업이 국내 소재 시험인증기관에서 해외 주요 인증(CE(유럽), UL(미국) 등)을 획득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확대

-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TUV(독일), BV(프랑스), SGS(스위스) 등)간 MoU를 통해 주요 해외 인증에 대한 국내 신청·취득 지원
 - 국내 시험인증기관은 해외인증 취득 과정에서 해당국(중동, 싱가포르 등)에서 수출기업의 법정 대리인 역할도 수행

<해외인증 국내 대행 서비스 사례>

기관명	해외인증 서비스 품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CE 인증 대행(제품시험, 공장심사 등을 대행하고 인증 결정은 유럽 기관에서 실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Q)	- 배터리(獨TUV SUD 인증), 완구류(美 어린이제품안전인증(CPSIA)) 등에 대한 해외인증 대행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전기전자제품(국제전기위원회(IEC) CB인증) 인증시험 수행, 시험보고서는 국제상호인정

- 신청 기업은 해외인증 취득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
 - * 인증비용 절감 : 유럽CE(약 50%), 기타인증(美UL, 日JIS, 中CQC 등) : 약80~90%

□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해외 현지 시험소 설립 운영 및 지원

- 중국, 동남아 등 既구축 해외시험소(사무소)에 대한 운영을 확대하고, 우리기업 해외진출과 연계한 신규 시험소 설립·운영 지원
 - 배터리, TV등 해외 수출(현지생산)시 해당국 인증 수요에 대응을 위한 국내 인증기관이 해당국 동반진출에 대해 장비 등 지원 검토

* A 시험기관은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L사, H사)의 TV등 전자제품 시험인증 수요 지원을 위하여 현지 시험소 설립 투자(70억) 계획 중

- ODA(정부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현지 시험인증 인프라 협력기반 구축
 - 개도국에 한국의 표준·인증 제도 전수 및 인력양성, 국내기관의 현지 시험소 신규 구축 추진

* 22-24년, 우즈벡 에어컨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사업 추진 예정

① 해외 현지 시험소 및 사무소 현황

기관명	국가	도시(형태)	주요 업무
산업기술시험원 (KTL)	중국	상해(지사) /심천(시험소)	- 국제/제3국 인증(CB, CE, ETL, PSE 등) 전기안전시험평가 - 국제 및 제3국 (CB, CE 등) EMC 시험 및 디버깅, 블루투스 RF 등의 무선시험 - 전기용품/무선통신기기 KC 인증 규제안내 및 인증대행 * 상해지사 - 심천시험소 시험인증서비스 마케팅 수행
	UAE	두바이	- 국내 수출기업 중동수출 대행 및 지원 - 중동(UAE, 사우디 등) 및 유럽 정부 등과 국가 공동 프로젝트 개발 (에너지, 원전, 의료 등)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중국	상해(지사)	- 화장품(NMPA),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등록 등
		청도(지사)	- 중국 현지 법정대리인(경내책임자) 업무 - 화장품(NMPA), 화학물질 등록, GB TEST 등
		심천(지사)	- KC인증 및 공장심사 지원, CCC인증, JIS인증 등
		심천(시험소)	- 이차전지시험(국제상호인정 CB 시험 등)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사)	- 유럽 CE인증, EU REACH, 유럽 화장품(CPNP) - 유럽 인증 법적대리인 업무, KC인증 및 공장심사 지원
	멕시코	멕시코시티(사무소)	- 중남미 권역 의료기기 및 위생등록 지원 - 멕시코(NOM), 브라질(NCC), 미국(FDA, EPA) 등
	베트남	하노이(사무소)	- CR Mark 인증, 동남아권 의료기기 인허가 지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중국	청도(시험소)	- 중국/미국/유럽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유해물질시험
		상해/심천(사무소)	- 중국화동(상해), 화남(심천) 지역 현지 영업 - 중국 현지 시험·인증 지원 및 인허가 대행
	베트남	호치민/하노이(사무소)	- 바이오 플라스틱,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협의 중('2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중국	심천(시험소) 상해(사무소)	- 배터리 분야 시험 - KC 인증 및 공장심사 지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험소)	- 가전제품 안전, 전자파시험 ('23~)
	UAE	두바이(사무소)	- 중동 인증(GCC, SASO 등) 업무 ('22.11~)

한국의류시험 연구원(KATRI)	중국	상해(시험소)	- 섬유 품질·유해물질시험 및 의류외관검사
	중국	연태(사무소)	- 의류외관검사
	베트남	호치민/하노이(사무소)	
FITI시험연구원	중국	상해(시험소)	- 섬유 품질·유해물질시험
		연태(시험소)	- 외관검사 및 섬유 품질시험
		청도(사무소)	- 외관검사 및 영업지원
		광주(사무소)	- 해외바이어 업무대행, 영업지원
	베트남	호치민(시험소)	- 섬유 품질·유해물질시험
		하노이(사무소)	- 외관검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사무소)	- 외관검사
	미국	LA(사무소)	- 해외바이어 업무대행, 영업지원
		뉴욕(사무소)	- 해외바이어 업무대행, 영업지원

② ODA 기반 시험인증인프라 협력 현황

구 분	우즈벡 에어컨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규모/기간/사업지역	2,804백만원('22년 570백만원) / '22~'24년 / 우즈벡, 타슈켄트 * 시험소 건물은 우즈벡측 제공
우리측 지원 내용	에어컨 국가표준 에너지효율등급 제도 전수, 에어컨 국제공인시험소 구축, 한국의 시험소 운영 노하우 전수 등
우즈벡 진출 한국기업 애로	LG, 삼성전자 에어컨 수출량이 많으나('19년 110만 달러), 우즈벡 시험소 부재와 불필요한 시험요구(러시아 표준)

VI. 향후 계획

□ 추진일정

개선방안	담당과	추진 일정		
		'22	'23	'24
시장변화에 발맞춘 인증제도 및 시장환경 개선				
① 인증제도의 지속 개선	시험인증정책과 기술규제조정과 (제도별 담당과 포함)			
② 법정 인증기관 지정요건 개선	전기통신제품 안전과 (제도별 담당과 포함)			
③ 시험인증의 신뢰성 강화	시험인증정책과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 지원체계 강화				
④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수수료 감면	시험인증정책과 (제도별 담당과 포함)			
⑤ 다수인증 품목 확대 및 지원 체계 강화	시험인증정책과			
⑥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인증기관 글로벌 진출 확대	시험인증정책과			